

제 107호

행정명령(EXECUTIVE ORDER)

**주정부 계약 관련 조항의 일시 정지**

2013년 6월 28일에 본인은 Broome, Chenango, Clinton, Delaware, Essex, Franklin, Herkimer, Madison, Montgomery, Oneida, Otsego, Tioga, Schoharie, St. Lawrence 및 Warren 카운티에 재난 비상을 선언하는 행정명령 제103호를 발행하였습니다;

**이제, 그러므로 본인 ANDREW M. CUOMO** 뉴욕주 지사는 주 재해 비상사태 기간동안 어느 기관의 법규, 지방법, 조례, 명령, 규칙 또는 규정의 특정 조항,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재해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행정법 2-B조의 29-a항에 의해 그 조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, 2013년 6월 28일부터 추가 고지시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의 법률들을 일시 정지합니다:

주 재정법 제163조, 국토보안비상서비스과장이 표준 조달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필요한 물품, 서비스, 기술 및 자재를 계약하고 구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;

주 재정법 제112조, 주 헌법 제1조 제V항과 일치하는 한도 내 및 국토보안비상서비스과장이 주 재정법 제136-a조에 의거 전문 서비스를 위한 긴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리고 주 재정법 제136조에 의거 물품, 서비스, 기술 및 자재를 긴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추가 작업, 현장 및 시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도 내에서.

2013년 7월 3일 Albany시에서 주 옥새 및 본인의

자필로 서명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